

2025년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
※ 적용시기 : 2025. 1. 1. 기초금액 발표분부터

공사규모 (직접공사비)	공사기간	[간접노무비]	[기타경비]	공사규모 (추정가격)	[이윤]	[일반관리비]	[산업안전보건관리비]							
		(직노) x 율	(재+노) x 율		(노+경+일) x 율	(재+노+경) x 율	□ 도급자관급 미포함		(재+직노) x 율					
							□ 도급자관급 포함		(재+직노+도급자관급) x 율과 (재+직노) x 율 x 1.2 중에 작은 금액					
5천만원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3.1	8.0	50억 미만	15.0	6.0	안전관리비 대상액 ^{주)}		구분	요율	기초액(천원)			
	7~12개월 (365일)	12.6												
	13~36개월 (1095일)	11.6					5억 미만		건축공사	3.11	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10.8							토목공사	3.15				
5천만원 이상 - 1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9	7.4				300억 미만	12.0	[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]	특수건설공사	2.07			
	7~12개월 (365일)	11.4									건축공사	2.28	4,325	
	13~36개월 (1095일)	10.4								토목공사	2.53	3,300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9.6								중건설공사	3.05	2,975		
1억 이상 - 5억 미만	6개월 이하 (183일)	11.6	6.7	300억 - 1000억 미만	10.0	적용제외				특수건설공사	1.59	2,450		
	7~12개월 (365일)	11.1									건축공사	2.37		
	13~36개월 (1095일)	10.1								토목공사	2.60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9.3								중건설공사	3.11			
5억 이상	6개월 이하 (183일)	11.4	6.2				1000억 이상	9.0		특수건설공사	1.64			
	7~12개월 (365일)	10.9									건축공사	2.64		
	13~36개월 (1095일)	9.9								토목공사	2.73			
	36개월 초과 (1096일)	9.1								중건설공사	3.39			
* 기타경비항목: 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, 여비·교통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										특수건설공사	1.78			
[산재보험료]				[건강보험료]		[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]				* 총 공사금액(도급금액+도급자관급금액)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) 안전관리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) 대상액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: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-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: 재료비(도급자관급 포함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또는 재료비(도급자관급 제외)와 직접노무비의 합계				
(노) x 3.56				(직노) x 3.545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 적용, 노동부 고시 제2024-1호(2024. 1. 5.),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)				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적용제외								
[고용보험료]				[노인장기요양보험료]		[공사이행보증수수료]		* 건설공사의 종류						
(노) x 율				(건강보험료) x 12.95		(직접공사비) x 율		- [건축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나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강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		
공사배정규모(추정금액)		요율		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공사규모(추정가격)		요율		- [토목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/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강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				
[1등급] 1200억 이상	1.57		70억 미만							[직공비x0.0141%]x공기(년)				
[2등급] 800억 ~ 1200억 미만	1.30		70억이상~120억미만			[1백만원+(직공비-75억)x0.0102%]x공기(년)		[중건설공사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(별표 1) 제1호 '가'목, '라'목 해당공사 중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· 고재방·담 공사 등 · 담 신설공사,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방신설공사 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· 화력, 수력, 원자력,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한 신설공사 및 제방신설공사 · 터널신설공사 등 · 도로, 철도,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, 교량,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						
[3등급] 520억 ~ 800억 미만	1.13		120억이상~250억미만			[1.5백만원+(직공비-130억)x0.0077%]x공기(년)								
[4등급] 340억 ~ 520억 미만	1.06		250억이상~500억미만			[2.4백만원+(직공비-250억)x0.0063%]x공기(년)								
[5등급] 210억 ~ 340억 미만	1.03		500억 이상			[4백만원+(직공비-500억)x0.0050%]x공기(년)								
[6등급] 130억 ~ 210억 미만	1.02													
[7등급] 고시금액 ~ 130억원 미만	1.01													
*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, 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(2021.7.1.), 고용보험법 시행령 (주택건설업자,건설업자,전기공사업자,정보통신공사업자,소방시설업자,국가유산수리업자) * 총공사금액(도급금액+관급금액)에서 부가세 제외)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※ 등급기준: 조달청 등급별 유지자차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(조달청 공고 제2023-235호, 2023.7.6.)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, 2021.7.1./산자부 고시 제2023-131호, 2023.7.1.)				* 공사기간 1개월(30일)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※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(국토부 고시 제2018-462호, 2018.7.26.)				- [특수건설]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(별표1) 제1호 '마'목로서 시행규칙(별표3)에서 구분한 조정공사 /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강·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· 「전기공사업법」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, 「소방공사업법」, 「문화재수리공사업법」에 의한 공사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,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2 건축공사,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※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준 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, 2024.1.1.)						
[퇴직공제부금비]				[환경보전비]		* 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		□ 수익계약 시 1차 낙찰률, ()은 2000.7.31.이전 (「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」 제9조)						
(직노) x 2.3				적용제외 ※ 단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제1장 적용기준 1-27에 의거 계산가능		- (시행령 제42조 제1항)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		-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.75%(85%)미만인 경우: 87.75%(85%)						
*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※ 국토부 고시 제2015-610호(2015.8.20.) 요율 적용						- (시행령 제6장) 대형공사계약(대안입찰, 일괄입찰), 특정공사의 계약		- 추정가격10억 ~ 50억미만으로 86.75%(83%)미만인 경우: 86.75%(83%)						
□ 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건축,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(단,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<전기·통신·소방·전문 및 기타공사>을 기준으로 함)						- (시행령 제9장)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		- 추정가격50억 ~ 100억미만으로 85.5%(80%)미만인 경우: 85.5%(80%)						

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